

의안번호	2125954
의 퇴 인	정경희 의원
회 답 일	2023.12.27.
추계번호	23C5068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정신 등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 유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	(제1항)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취약계층 보호·지원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2. 제10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협업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항) 전략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 구성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제4항) 전략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차관보가 된다. (제5항)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무규정
		(제6항) 전략회의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재량규정
		(제7항) 그 밖에 전략회의 및 분과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8조 (전담기구의 설치)	(제1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5	안 제9조(실태조사)	(제1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0조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제1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계층 현황 2.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6. 그 밖에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6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안 제12조(민간의 참여)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2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4조 (취약계층 데이터 분석 등 지원)	(제1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전략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2. 여러 기관 간 데이터 분석 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제2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2.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3.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행정데이터 4.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재량규정
		(제3항) 제2항제1호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4조 또는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여서는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다.	
		(제5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거나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6항) 제5항에 따른 취약계층 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 안 제12조(민간의 참여) 안 제14조(취약계층 데이터 분석 등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1)2)3)4)5)6)

- 1) 안 제4조의 경우 선언·권고적 규정으로 국가 등의 구체적 책무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안 제4조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2) 안 제5조의 경우 제정안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동 제정안이 아닌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재정수요 유발요인이 아님
- 3) 안 제7조의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 신설로 회의 개최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회의의 의장은 교육부장관, 구성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회의수당 등이 소요되지 않으며, 회의 개최 부대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4) 안 제9조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2023.07.)에서 '범부처 연계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실제 2024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5) 안 제10조의 경우 정부는 2023.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2023.07. 교육부)를 발표하였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본계획은 기존 논의사항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6) 안 제13조의 경우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교육부훈령 제410호)」

- 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담기구’(안 제8조)가 설치·운영되고, 취약계층 정책에 참여하는 개인 등의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안 제12조), ‘취약계층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게(안 제14조)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및 예산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안 제8조**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될 수 있으나, 저소득, 장애인, 아동·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다문화, 노인, 신고취약자·실종자·범죄피해자 등 대상을 포괄하는 취약계층 범위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전담기구의 조직규모 및 필요예산에 대한 유사 선례 검토 및 합리적 가정 설정이 어렵고 관련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가 어려움
 - **안 제12조**에 따라 개인·법인·단체 등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정책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유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민간참여 범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2023.07.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문제해결 방식의 적극 도입⁷⁾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 연계·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⁸⁾, 부동산 중개업소 등 민간기관과 지자체 연계⁹⁾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소요예산 계획 등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안 제14조**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약계층 데이터분석센터가 설치되거나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2023.07.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 따라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교육·복지·노동·문화 등 사회분야 전문기관(20개)으로 구성된 협력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1억원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7) 정부 보유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지원 앱 등을 개발하는 시빅테크 방식 도입 및 분산된 재난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빅데이터 기반 재난대비·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등
- 8) 정부가 취약계층(장애인 등) 직업재활 및 IT·디지털 분야 훈련 등을 강화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금융기업·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식
- 9) 중개업소가 계약과정에서 파악한 주거, 생계, 의료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포착·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각종 통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측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 전문가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신규이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데이터 유관기관 워킹그룹 결성 등을 통해 데이터 연계·분석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다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또는 위탁사업으로 실시할지 여부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비용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에 따라 동 개정안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